성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8년 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「지방세법」 개정(시행 2018. 1. 1. 법률 제15335호)으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상위 법령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, 재산세 중과대상지역을 군 지역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항 삭제(안 제11조)

- 「지방세법」에서 군 지역은 재산세 중과대상지역에서 제외함

나. 주택분 재산세의 7월 일시 부과·징수 금액을 상향조정함(안 제14조)

-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 : 10만원 → 20만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『지방세법』 등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 〔기획감사실-1747('18.2.28)〕

라. 성별영향평가 분석 : 개선사항 없음 〔주민복지과-13062('18.3.2)〕

마. 입법예고 : 의견없음 〔기간: '18.3.2~ '18.3.22〕

성주군 조례 호

성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1항 중 “영 제85조의3”을 “영 제85조의4”로 한다.
제11조를 삭제한다.
제14조 중 “10만원”을 “20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신고의무)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3에 따라 성주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	제9조(신고의무) ① ---------- 영 제85조의4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중과대상지역)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“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”이란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.	<삭 제>
제14조(납기)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	제14조(납기) ---------- 20만원 ----------.